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58회 제1차 정례회 (2022. 9. 27.)

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**최국모**

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2-97
- 나. 제출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2년 9월 5일(월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2년 9월 13일(화)

2. 제출사유

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목적으로 조성된 광흥당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그에 대한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광흥당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19조의 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-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(지방문화원의 육성 등)
-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
- 「서울특별시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조(구청장의 책무)

2) 추진 필요성

-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향토문화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광흥당을 위탁 운영해 온 마포문화원에 위탁(재계약)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: 광흥당 운영 및 관리

- 1) 광흥당과 부속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
- 2) 광흥당 운영에 관한 사항
- 3) 공민왕사당과 부속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
- 4) 공민왕사당 운영에 관한 사항
- 5) 공민왕사당 등 문화재와 연계한 향토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
- 6) 향토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1) 위치: 마포구 독막로21길15 (창전동)
- 2) 규모: 연면적 382.01㎡ (대지면적 438.42㎡)

구분	면적	내용	비고
지상1층(한옥)	106.92㎡	교육실(3), 대청(1)	사주문, 전통담장
지하1층(철근콘크리트)	275.09㎡	다목적실(1), 관리실(1)	

※ 관련시설 : 공민왕사당 : 등록문화재 제231호(2006.3.2)

마. 민간위탁기간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적격여부 심사

사. 소요예산

- 1) 소요예산: 201,200천원(구비 100%)
- 2) 산출근거

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
계	201,200		
광흥당 관리	139,200	- 인건비(3명) 111,202천원 - 일반운영비 등 27,998천원	
프로그램 운영	62,000	- 강사료 및 행사운영비 62,000천원	

4. 검토보고

- 이 동의안은 마포구 독막로에 위치한 광흥당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.
- 광흥당은 등록문화재 제231호인 공민왕 사당 인근에 위치한 한옥문화공간으로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향토사료의 발굴·전시 등의 활동으로 마포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.
- 광흥당에 대한 최초의 민간위탁은 2014년 1월 1일이었으며 마포문화원이 최초부터 현재까지 동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바, 2022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. 이 동의안은 위탁 진행절차를 보건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¹⁾ 규정에 합당하고, 광흥당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성격이 구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며, 문화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현재의 수탁 기관인 마포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1)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
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 <신설 2021.5.6.>